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여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인 1%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보다 두터운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지원만으로는 그 보호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이행 비율 및 그 소속기관의 평가를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